#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PROJEC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40-20 동명빌라 제1층 제101호 외 1세대
CLIENT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REPORT NO.	N250926-01A

## CBRE HYUN

## (주)감정평가법인 씨비알이 현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정 윤 주	M		7	(Time)						
	㈜감정평가법인 씨비알이 현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한 상 연 전체											
감정	감정평가액 육억이천구백만원정(₩629,000,000.−)											
의뢰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감정평가목적	-	공매								
제출처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식회사	기준가치	시간	장가치							
소유자 우리지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 주석 (수탁자)	식회사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채무자 -			2025.10.10.	2025.10.10.	2025.10.15.							
- M-	공	부 ( 의 뢰 )		사 정	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m²)	금 액(원)						
감 정	구분 건물	2세대	구분 건물	2세대	-	629,000,000						
평 가		이	하	প	백							
내												
용												
	합계					₩629,000,000						
심 사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			하게 심사한 결과 역	기 감정평가 내용이						
내 용	심사자 : 감정평가사											

## I. 대상 물건 개요

### 1. 대상 건물 개요

#### 가. 대상 물건 목록

일련 번호	소재지	층	호	이용상황	전유면적 (㎡)	공용면적 (m²)	합계 (㎡)	대지권 (㎡)
(1)	우동 640-20	1	101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5.50	3.34	28.84	13.85
(2)	우동 640-20	3	303	공동주택(다세대주택)	30.80	4.03	34.83	16.73

※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 나, 위치 및 주변 환경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역(지하철 2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호텔, 공원, 해수욕장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역으로 제반 주 위환경은 양호함.



※ 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지도 MIni

### 다. 전체 건물 현황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40-20	사 <del>용승</del> 인 일 자	1999.09.18
7.5	<b>対つヨココにて ヘルトロ</b> せ	층 수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연면적(㎡)	652,335
이 용	공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적률(%)	266.72
상 황	현황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폐율(%)	74.76

※ 출처 : 건축물대장 표제부 등 관련자료 재구성

#### 라. 물건 세부 현황

#### ▮ 일련번호 (1), (2)

구분	내용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40-20 동명빌라 제1층 제101호 외 1세대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해운대역, 2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양호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대상 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구분건물로서 외벽: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황	일련번호 (1), (2)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부대설비 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구비된 것으로 조사됨.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의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임대관계 및 기타	-

### 2. 기타 참고사항

- 대상 물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이용상황 등은 의뢰인 제시자료 및 공부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등을 기준하였음.
- 대상물건의 경우 의뢰인 요청으로 다세대주택 내부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외부관측, 인근탐문 등을 통하여 대상 단지 내 유사 면적의 구조와 평균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람.
- 구분 소유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바,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다만 귀 요청에 따라 본건 평가명세표상 토지, 건물의 가액배분은 「법원감정평가실무」(한국감정평가협회, 2021년)의 배분비율표에 의거하여 배분하였으며, 지역 및 시장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 일련번호 (1), (2)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 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Ⅱ.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역(지하철 2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 건물)으로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였음.

### 3. 감정평가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10월 10일]임.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나. 감정평가조건

\_

### 5. 실지조사 여부 등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10월 10일이며, 현황과 공부상 면적·구조·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였음.

## III. 감정평가 방법

### 1. 감정평가방법 개관

### 가. 원가방식(Cost Approach)

원가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원가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나. 비교방식(Market Approach)

비교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이 있음.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공시지가기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다. 수익방식(Income Approach)

수익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 가. 관련 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 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 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 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나.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대상물건은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인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관 한 규칙」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 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수 행하지 아니하였음.

##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거래사례비교법 개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대상물건 사례의 거래가격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시산가액

### 2. 적용 거래사례 선정

###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사 <del>용</del> 승인일)
#1	해운대구 우동 154	메트로	3/302	79.590	900,000,000	11,307,953	2025.02.27.	2002.07.22.
#2	해운대구 우동 230-1	-	2/203	70.515	805,000,000	11,416,011	2025.02.15.	1991.12.27.
#3	해운대구 우동 173-1	샤인빌라	4/401	71.845	870,000,000	12,109,402	2024.11.14.	2002.04,25.

※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KAIS)

#### 나.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최근의 거래사례로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규모, 이용상황 등의 물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1]을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호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사 <del>용</del> 승인일)
#1	해운대구 우동 154	메트로	-	3/302	79.59	900,000,000	11,307,953	2025.02.27.	2002,07,22.

※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 3. 사정보정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정보정 = 1,000)

### 4. 시점수정

구 분	기 간	시점수정치	비고
지가변동률	2025.02.27. ~ 2025.10.10.	1.0078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지역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	2023,02,27, 3 2023,10,10,	0.99301	부산 동부산권

대상물건과 같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로 평가하는 경우, 지가변동 률은 해당지역의 지가변동을 반영하는 수치로서 시점수정치로 적용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여, 대상물건의 가격변동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시점수정 = 0.99301)

###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 일련번호 (1)

	구분	대상 기준	비고		
요인	비교항목	소계	미北		
	지역적 요인	1.00	대상물건과 사례는 대체로 유사함.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단지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0.97	대상물건은 사례 대비		
외부요인	차량이용의 편리성	0.77	접명도로 등에서 열세함.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 층수				
단지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0.98	대상물건은 사례 대비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내부요인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0.90	성과인구에 따른 모두도 등에서 열세함.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층별 효용				
	향별 효용		대상물건은 사례 대비		
<b>≠</b> щОО!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1.03	네성물신은 시네 네미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하나		
호별요인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 크기	1,05	전유부분의 면적 등에서 우세하여		
	내부 평면방식(베이)		종합적으로 우세함.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		
누계	-	0.979	-		

#### ▮ 일련번호 (2)

	구분	대상 기준	w-
요인	비교항목	소계	비고
	지역적 요인	1.00	대상물건과 사례는 대체로 유사함.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단지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0.97	대상물건은 사례 대비
외부요인	차량이용의 편리성	0.97	접면도로 등에서 열세함.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 층수	0.98	대상물건은 사례 대비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내부요인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0.90	성파인구에 따른 도우도 등에서 열세함.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층별 효용		
	향별 효용		
호별요인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1.06	대상물건은 사례 대비
오필요인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 크기	1.00	전유부분의 면적 등에서 우세함.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
누계	-	1.008	-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시산가액 단가 (원/㎡)
(1)	11,307,953	1.000	0.99301	0.979	10,993,103
(2)	11,307,953	1.000	0.99301	1.008	11,318,742

### V. 시산가액의 적정성 검토

### 1. 가격자료의 검토

#### │ 유사 집합건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이용상황	층/호	전유면적 (㎡)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평가 목적	기준시점
а	해운대구 중동 883-7 외	에이스빌라	다세대주택	2/204	24.84	310,000,000	12,479,871	담보	2023.01.20.
b	해운대구 우동 520-64	삼봉주택	연립주택	1/107	56.26	552,000,000	9,811,589	시가 참고	2022.09.21.
С	해운대구 중동 883-7 외	에이스빌라	다세대주택	4/401	41.67	486,000,000	11,663,067	시가 참고	2022,07,22.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 | 사례 위치도



※ 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지도 Mini

### 2. 인근 낙찰가율

지역통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기간	용도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건수
1년간 평균	다세대	52.06%	51.67%	354	62.87%	54.43%	31	63.43%	63.43%	1
6개월 평균	다세대	54.36%	53.43%	201	63.36%	52.12%	15	-	-	-

※ 출처: 부동산 태인(2024.10.15. ~ 2025.10.15.)

### 3. 시산가액의 적정성 검토

대상물건의 입지여건 및 개별특성과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 부동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방 매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이 산출된 대상물건의 시산가액 단가는 평가 사례 가격수준 및 거래사례 가격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VI.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 1.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시산가액 단가(a, 원/㎡)	전유면적(b, ㎡)	산출가격(c, a×b=c), (원)	결정가격 (원)	
(1)	10,993,103	25.50	280,324,127	280,000,000	
(2)	11,318,742	30.80	348,617,254	349,000,000	
	합계			629,000,000	

<sup>※</sup> 결정가격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음.

### 2. 결정의견

평가대상 집합건물의 주위환경, 내·외부 요인 및 층별·위치별 효용과 인근 유사 집합건물의 정상적인 거래 시세,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상물건의 시장성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12조 제1항 의거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1 TUTI	기山 지목 용도지역 면적(㎡)		m²)	감정평가액			
번호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공부	사정	금액(원)	비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40-20 동명빌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3번길 24-4			1층 2층 ~ 4층 각	103,815 182,840			
1	,	п	대	일반상업지역	313.3			
(1)				(내) 철근콘크리트조	25.50	25.50	200 000 000	III <del>7</del> 7104
				제1층 제101호	25.50	25.50	28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	1,385		1	포함)
				소유권대지권	313.3× 31,330	13.85		
						배분내역	1/0.000.000	
						토지 : 건물 :	168,000,000 112,000,000	
(2)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3층 제303호	30.80	30.80	349,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1	1,673	1/77	1	포함)
				소유권대지권	313.3× 31,330	16.73		
						배분내역 토지 :	209,400,000	
						포시 · 건물 :	139,600,000	
	합 계						₩629,000,000	
			Ol	하	Ф	백		
	SE HIVIIA							

## 광역위치도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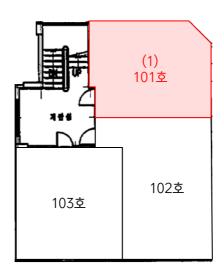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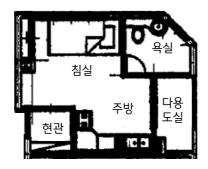


No scale

### <u>호별배치도</u>



### <u>내부구조도</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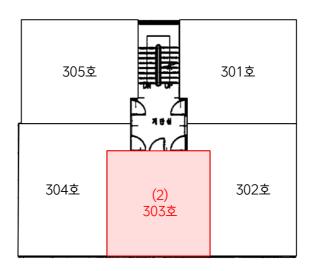
〈(1) 제1층 제101호〉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No scale

### <u>호별배치도</u>



### 내부구조도



〈(2) 제3층 제303호〉

# 사진용지



【 대상건물 전경 】



【 대상건물 주출입구 】

# 사진용지



【 대상건물 주위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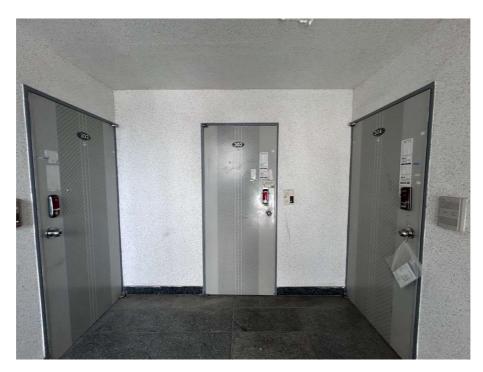


【 대상건물 주위환경 】

# 사진용지



【 일련번호 (1) 101호 현관 】



【 일련번호 (2) 303호 현관 】